

◎ 經營參加權과 利益均霑權

- 現行: 없음

- 改進黨: 없음

- 改進黨: 133, 134

第 33 條 勤勞者는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生産

의 要求에 應하기 위하여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企業의 經營에 參與할 수 있다.

第 34 條 勤勞者는 營利를 目的

으로 하는 企業에 있어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를 가진다.

○ 經營參加權과 利益均霑權의 인정문제

- 經營參加權의 概念은 學理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바, 西獨에서와 같이 使用者와 勤勞者의 共同經營體制를 도입한다는 것은 時期尙早이며 우리나라 勞使協議制度나 從業員持株制度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 法律로 실시하고 있어 새삼스럽게 憲法에 규정할 경우 勞使間의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음.

- 利益均霑權은 우리 制憲憲法에 규정되었던 사항이나 그 概念이 애매모호하고 資本主義 原理에 배치되며, 外國立法例에 全無한 제도임.